

# 2016년도 보통교부금 산정 지침

## 1 조정교부금 제도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조정교부금제도 의의

- 지방세 등 자치구간 세원의 불균형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전 자치구가 자체 세입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 표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자치구에 대하여 시에서 재정을 지원해 줌으로써 자치구간 재정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 보장

### 조정교부금 재원 : 보통세의 21%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12. 6.29 개정, '13. 1. 1 시행)  
-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보통세
- 보통세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 조정교부금 종류

- 보통교부금 : 자치구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행정수행경비 수요액(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 후, 자치구의 일반재원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
  - 기본배분 :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보전 ⇒ 자원부족시 조정률 적용  
{ ※조정률 = (기준재정수입액 + 보통교부금) / 기준재정수요액 }
  - 가산배분 : 기본 배분후 잔여액 발생시 건전재정평가에 의해 차등 배분
- 특별교부금 :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 공공시설의 신설·보수·복구 등의 수요
  - 기타 예산 성립후 발생한 특별한 수입의 감소나 재정수요 등

- 보통교부금 배분 :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배분(90%)
- 특별교부금 교부 : 특별재정수요에 대한 수시지원(10%)

**연도별 조정교부금 현황(서울시 예산액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1995년	710,706	675,171	95,535
1996년	959,534	863,581	95,953
1997년	1,078,773	970,896	107,877
1998년	790,896	711,806	79,090
1999년	965,595	869,035	96,560
2000년	1,309,873	1,178,886	130,987
2001년	1,239,661	1,115,695	123,966
2002년	1,248,215	1,123,394	124,821
2003년	2,133,176	1,919,859	213,317
2004년	2,176,330	1,958,697	217,633
2005년	1,601,007	1,440,906	160,101
2006년	1,684,499	1,510,460	174,039
2007년	2,204,032	1,983,629	220,403
2008년	1,777,785	1,600,006	177,779
2009년	1,674,731	1,507,258	167,473
2010년	1,722,072	1,549,865	172,207
2011년	1,539,345	1,385,411	153,934
2012년	1,697,210	1,527,489	169,721
2013년	1,853,048	1,667,743	185,305
2014년	1,976,353	1,778,718	197,635
2015년	2,156,790	1,941,111	162,393

**2**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재정 수입액 산정 기본방향**

- 등록면허세 및 공동과세 제도운영에 따른 재산세 시뮬레이션 실시로 정확한 자치구세 추계(시 세무과 추계자료 참조)

-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되, 과거 징수실태 및 관련제도 변경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영
- 지방재정운영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가능한 세원을 세입화하고, 투자사업의 민간참여유도 및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세입 확충 추진
- 조정교부금의 기초가 되는 세입추계에 있어 실제 결산액과의 차액은 다다음 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가감 등 보정하여 정확한 세입추계 실시
  - 당해연도에 유리한 교부금 산정을 위하여 추계 수입액을 축소·누락할 경우 2017년 교부금 산정시 2015년 결산액을 근거로 엄격한 패널티(결산 차액 100% 반영 등) 적용

## □ 구세 및 세외수입 등

### 구 세

- '15년도 구세의 추계는 과거실적, 현재의 동향 및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가능액 추계
  - ※ 세입신장을 및 징수율은 2014년 이전 3~5개년 평균치를 감안하여 추계하되, 최근의 경기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
  - 등록면허세 : '15년 징수실적 및 결산전망을 토대로 적정금액 추계
  - 재산세 : 市에서 통보된 공동과세액 반영
  - 지난년도구세 : 과거 징수실적 및 '15년도 구세 체납상황 등을 감안 추계

##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
  - 확실한 대상만을 선정하되,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위치, 규모, 산출근거)
  -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기타의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 가격 기준
  - 무상임대 기간이 경과한 재산은 공개경쟁입찰로 유상임대 전환
- **사용료, 수수료 수입**
  -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비현실적인 요금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
  - 이용대상, 공시지가인상 및 면적증가분 등 최근 5개년간 평균 신장율을 감안하되, '15년도 실적치 및 경기 동향을 감안 추계
- **사업수입** : '11. ~ '15. 자치구실적 및 증감추세를 반영 추계(보건소 수입)
- **징수교부금** : '16년도 시세 예산편성내역 및 '15년도 시세 징수실적치를 감안한 규모 반영, 기타 징수교부금은 누락 없이 반영(시세무과자료참조)
- **이자수입** : '15년도 자금잔고 수준과 '16년 세입규모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범위 내에서 계상

### 〈임시적 세외수입〉

- **재산매각수입(※)**
  - '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처분하기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받을) 재산에 한하여 그 수입예정액을 계상(공유재산 관리계획 첨부)
    - ※ 2014년 이전 반영한 동일재산의 재산매각수입 재반영 금지
- **순세계잉여금**
  - '15년도 세입의 정확한 예측 및 향후 불용예산액을 추정하여 순세계 잉여금 등 예상총액 전액 반영 (최근 3년 ~ 5년간 평균치 참조)
- **부담금** : 개발이익환수금 등 예산세입 전액 계상
- **그외수입 및 지난년도수입 등 기타수입**
  - '15년 이전 매년 세입내역을 검토하여 징수가능 대상 및 금액 계상

## 조정교부금 제도 용어설명

### ○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요액이란 각 자치구의 지리적, 사회적 제반여건 등 행정환경을 합리적인 측정단위로 산출한 표준적인 재정수요액을 말한다.
- 즉, 지방의원수, 인구수, 공무원수, 행정구역 면적, 도로면적, 기초생활수급자수 등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측정단위에 회귀분석으로 산출된 각각의 비용을 각 자치구의 단위계수(측정단위별 통계수치)에 곱하고 고정비용을 더하여 얻은 수요액이다.
- ※ 예) 지방의회비 기준재정수요액 = (지방의원수 × 단위비용) + 고정비용

###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기준재정수요액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자치구의 일반재원 수입(자치구 자주재원)을 말한다.
- 지방세(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난해도구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수입이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정된다.
- 단, 목적이 정해진 국·시비 보조금, 불규칙한 수입원인 재산매각 수입, 전년도 이월금은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제외.

### ○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 재정력지수)

- 자치구의 수입재원(기준재정수입액)이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요액)을 충당할 수 있는 비율
- ☞  $\text{기준재정수요충족도}(\%) = \text{기준재정수입액} \div \text{기준재정수요액}$

### ○ 재정부족액

-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액수
- ☞  $\text{재정부족액} = \text{기준재정수요액} - \text{기준재정수입액}$